긴급 입찰 사유서

□ 사업개요

○ 용 역 명 : 2027년 수도권 대기환경측정망 운영·관리 위탁

○ 용역기간 : 2027. 1. 1. ~ 2027. 12. 31.

○ 예상금액 : 1,423,852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
○ 계약방법 : 일반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
○ 과업내용 : 대기환경(미세먼지 등) 측정장비 운영 관리 전반

- 측정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교정, 소모품 교체 등 유지·점검
- 측정자료 이상, 장비 고장 시 신속한 대처로 장비 정상상태 유지 등

□ 긴급 입찰 사유

○ **'미세먼지로 인한 피해'**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따라 **'사회재난'**으로 **지정하여 관리**하고 있음

-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**12월부터 3월까지**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강화된 조치로 **미세먼지 계절관리제***를 운영 중('19년~)

  * 근거 :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

- 특히, 우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집중 관리기간을 1개월 확대 운영('26.11.16.~'27.4.15.)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 시기에 관련 업무를 집중·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음.

○ 해당 계약 요청 건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**미세먼지 측정정보**를 **실시간 공개**함으로써 **국민의 알권리 충족** 및 미세먼지의 위해성으로부터 **국민건강**을 **보호**하기 위한 사업임

-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측정망에서 생산되는 **측정자료는 미세먼지 예경보제, 비상저감조치 발령*** 등 기초자료로 사용되며, 인터넷(airkorea.or.kr)을 통해 실시간으로 **대국민 공개**하고 있음

  *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,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, 공장, 공사장 등에서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조치

- 따라서, **연간 단위로 위탁 운영하는 본 용역**은, **사업 공백기간** 없이 **미세먼지 집중관리기간인 '27.1.1부터 필히 추진**돼야 하므로 **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제5항제1호 및 제35조제4항제3호**에 따라 긴급입찰로 요청

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**10일 전까지 공고**할 수 있다.

1.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
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026년 11월 9일

수 도 권 대 기 환 경 청 장